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. 7. 1 선고 2015가단359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담양전씨판추공후손원당중중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7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B 대 919m² 중
가. 별지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6m² 지상 시멘트
블럭조 스투트지붕 단층창고를 철거하고, 위 선내 ㉠ 부분 6m²를 인도하고,
나. 별지 도면 표시 16,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시멘트 블럭 담장을 철거하고, 별지 도면 표시 11,
12, 13, 16, 17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㉡ 부분 5m²를 인도하고,
다.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7, 18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㉢ 부분 9m² 지상 시멘트
블럭 스투트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하고, 위 선내 ㉢ 부분 9m²를 인도하고,
라.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8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㉣ 부분 3m² 지상 시멘트 블럭
스라브지붕 단층창고를 철거하고, 위 선내 ㉣ 부분 3m²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무영

별지